

2026

운항사 항해사 해사행정사 등

선박안전법

엠북 해사법규

공부혁명!
mbook.kr

- ★ 스마트폰 수험총서
- ★ 1시간 3분 완성
- ★ 최근 법령 개정 내용 반영
- ★ 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 종합

도서명 : 선박안전법

ISBN : 979-11-7393-074-4

발간일 : 2025-09-08

형식 : 스마트폰용 전자책(PDF)

저자 : 엠북

출판사 : 엠북

홈페이지 : <https://www.mbook.kr/>

이메일 : by4782@gmail.com

정가 : 7,000원



선박안전법

(이하 법)

[목차]

제1장 총칙(p5)

제2장 선박의 검사(p20)

제3장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
등(p36)

제4장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등(p49)

제5장 선박시설의 기준 등(p62)

제6장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p69)

제7장 삭제

제8장 검사업무의 대행 등(p79)

제9장 항만국통제(p85)

제10장 특별검사 등(p90)

제11장 보칙(p92)

제12장 벌칙(p104~115)

[약어]

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한국은 대한민국

사유없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서등은 선박검사증서등(선박검사증서,

임시변경증, 임시항해검사증서,

국제협약검사증서, 예인선항해검사증서)

물건등은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비고]

회색 형광펜은 법조문 제목

검은색은 법

보라색은 시행령

갈색은 시행규칙

(Copyright) 공부혁명 엠북(mbook.kr)

제1장 총칙

1~6조

1. 목적

- 선박의 감항성 유지,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 규정
-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2. 정의

1) 선박은 수상/수중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될 수 있는 것(선외기 장착한 것
포함)과 다음의 부유식 해상구조물

가) 이동식 시추선

- 액체나 가스상태의 탄화수소, 유황, 소금 등
해저 자원 채취/탐사(항구적으로 해상에
고정된 것은 제외)

나) 수상호텔, 수상식당, 수상공연장 등으로서
소속 직원 외에 13명 이상 수용(항구적으로
해상에 고정된 것은 제외)

다) 다음을 산적해 저장

- 기름, 폐기물
 - 하수, 분뇨 및 하수도, 공공하수도, 하수처리구역 유지/관리 관련 발생하는 준설물질,오니류(오염 침전물류)
 - 폐수, 가축분뇨
 - 선박/해양시설에서 사람의 일상적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분뇨
- 라) 위험물을 산적해 저장

2) 선박시설은 선박에 설치되었거나 될 다음 설비

- 선체, 기관, 돛대, 배수설비, 조타설비
- 계선설비(배를 항구 등에 매어 둠)
- 양묘설비(돛을 감아올림)

- 구명/소방/거주/위생/항해 설비
- 적부설비(위험물, 산적화물을 실은 선박과 운송물의 안전을 위해 운송물을 계획적으로 선박내 배치)
- 하역/작업/전기/원자력/컨테이너 설비
- 승강/냉동/냉장/수산물처리가공 설비
- 항만건설장비
- 선박 종류/기능에 따라 설치되는 장관 인정 특수 설비

3) 선박용물건은 선박시설에 설치/비치되는 장관 고시 물건

4) 기관은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보일러,

압력용기, 보조기관 등의 설비와 이들의 제어장치

5) 선외기는 선박 선체 외부에 붙일 수 있는 추진기관

- 선체로부터 간단한 조작에 의해 쉽게 떼냄

6) 감항성은 선박이 자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갖추어야 하는 능력

- 일정한 기상,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

7) 만재흘수선은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적재한도의 흘수선

- 여객/화물을 승선하거나 싣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최대한도

8) **복원성**은 수면에 평형상태로 떠 있는
선박이 파도/바람 등 외력에 의해 기울어졌을
때 원래 평형상태로 되돌아오려는 성질

9) **여객**은 선박에 승선하는 자로서, 다음 제외

가) 선원

나) 1세 미만 유아

다) 일시 승선한 다음 사람

a) 선원과 동승해 생활하는 선원 가족